# 『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관리·운영』 민간위탁(재위탁) 동의안

의 안 번 호 5809

제출일자 : 2020. 10.

제 출 자:대구광역시장

## □ 제안이유

- 지역 섬유패션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경영능력은 물론 국제적인 비즈니스 감각을 갖추고,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의 자립 운영과 섬유박물관의 위상을 높일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지역 섬유산업 활성화 도모
-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무를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11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## □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관리·운영

## 나. 민간위탁 필요성

- 지역 섬유패션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, 섬유박물관의 전시물 수집·보관·진열 및 기획·특별 전시회 운영을 위한 전문성 제고
-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시설물의 경제적, 효율적 관리

## 다. 위탁시설 개요

○ 시 설: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

○ 위 치 : 대구 동구 팔공로 227(봉무동)

- 사업규모 : 부지 13,732m², 연면적 49,667m²(지하 2층, 지상 9층)
- 주요시설 : 비즈니스센터, 다목적 홀, 섬유박물관 등
- 준공 및 개관 일자 : 2015. 5. 29.

### 라. 위탁 주요내용

- 위탁기간 : 2021. 1. ~ 2023. 12.(3년)
- 운영방법 : 공개경쟁방법을 통한 수탁자 선정 및 위탁 운영
- 위탁 주요사무
  - DTC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
    - · 지역 섬유패션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
    - · 섬유박물관 전시물 수집·보관·진열 및 기획·특별 전시회 운영
    - · DTC 시설의 종합적인 관리·운영
  - 기타 시장이 지역 섬유패션산업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
- 소요예산 : 12억원/년

## □ 참고사항

- 가. 민간위탁 추진계획 : 붙임
- 나. 민간위탁 협약서(안) : 붙임

### 다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
-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~제15조
-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
-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, 제13조~14조, 제18조

#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민간위탁 추진계획

'20년 12월 DTC의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 및 선정하여 위탁·운영하고자 함

## I 추진방향

- 위탁운영 3기를 맞는 DTC의 자립 운영과 섬유박물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(단체)을 선정하여 위탁·운영
- 섬유패션산업의 전문성과 경영능력은 물론 국제적인 비즈니스 감각 을 갖춘 운영주체 선정 추진

## I 추진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04조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
- O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~ 제15조
- O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, 제13조~14조, 제18조

## Ⅲ 세부추진계획

## 1. 위탁개요

○ 위탁시설 :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(DTC)

O 위 치 : 대구 동구 팔공로 227(봉무동)

○ 시설규모 : 부지 13,732m², 연면적 49,667m²(지하 2층, 지상 9층)

O 위탁기간 : 2021. 1. 1. ~ 2023. 12. 31.(3년간)

O 위탁방법 : 공개경쟁 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

O 위탁사무: DTC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

- 지역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
- DTC 시설의 종합적인 관리·운영
- 섬유박물관 전시물 수집·보관·진열 및 기획·특별 전시회 운영
- 기타 시장이 지역 섬유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
- O 위탁운영비: 12억원
- O 위탁조건
-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
- 「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등 관련규정 준수
- 시설 운영 결과 발생한 수익금은 시설에 대한 재투자, 잉여금 적립,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음
-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위·수탁 협약에 따라 관리·운영

### 2. 위탁 추진절차

O 추진절차



## 3. 수탁기관 모집

- 모집공고
  - 공고기간 : 8일간

- 공고방법 : 시 홈페이지, 공보
- 공고안 : 붙임 1
  - ※ 유찰시 계획에 의거 재공고 및 재모집 실시
- O 신청서 접수
  - 접수기간 : 모집 공고기간과 동일 09:00 ~ 18:00
  - 접수방법 : 방문접수
    - ㆍ 접 수 처 :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(산격동), 101동 섬유패션과
    - ·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마감일 18시까지 접수분에 한함
    - · 문 의 처 : 대구광역시청 섬유패션과(☎803-3341)
  - 제출서류
    - · 신청서. 서약서
    - · 법인(단체) 인감증명서
    - · 법인 : 정관, 등기부등본, 설립허가증 사본(원본대조필)
    - · 단체 : 단체등록증, 회칙, 규칙 사본(원본대조필)
    - · 인력, 기구, 재무상태, 시설, 장비, 기술보유 정도, 책임능력 및 공신력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  - · 사업계획서, 요약서, 제안 설명자료(책자 및 PPT)
      - ※ 소개. 자산현황. 인력과 기구. 시설과 장비. 기술보유. 재정운영계획 등 포함

## 4. 수탁기관 선정

- 선정 방법 :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
  - ·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3조(수탁기관의 선정방법)
- O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
  - 위원의 수 : 6~9명(위원장 포함)
    - ㆍ 당연직 : 경제국장
    - · 위촉직 : 공개모집 6명 정도(공고안 붙임 2)
      - \* 섬유패션, 박물관, 전시, 경제, 경영, 회계 관련 전문가

#### O 선정 상세

- 위원회에서 신청자의 제안설명, 질의·응답, 사업계획서, 제출 서류 등을 심사표에 의거 개별심사(붙임 3)
- 위원들의 심사점수 중에서 최고점수 1인과 최저점수 1인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점수를 합계하여 나눈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법인(단체)을 수탁 법인으로 선정(단, 동점일 경우 심사기준의③사업계획평가, ②전문역량, ④ 재정능력 평가의 순으로 점수합계가 높은 법인 선정)
  - ※ 유찰시에는 재공고를 하고, 재공고도 유찰되는 경우 기존 수탁기관인 대구경북 섬유산업연합회에 대한 **적정성 심의**를 거쳐 재계약 추진
- O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
  - 일 시 : '20년 10 ~ 11월 중
  - 장 소 : 대구광역시청 회의실
    - ※ 코로나19 확산 진행 여부 및 재공고 유찰에 따른 기존 기관 적정성 심의시 서면심의로 대체
- 선정결과 발표 : 시 홈페이지 게재 및 대상기관 개별 통보

## 5. 협약체결

- O 협약내용
  - 수탁자의 성명, 주소 및 의무, 위탁사무 및 내용, 위탁기간
  - 시설의 운영 및 수탁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
  - 그 밖에 시장이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O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시가 제시하는 협약서에 의한 협약 체결
- O 시와 수탁기관은 체결한 협약서를 공증하고 정본은 시에서 보관, 수탁기관은 사본 보관

## Ⅳ 향후계획

O '20. 10월 :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

O '20. 11월 :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

O '20. 12월 : 위·수탁 협약 체결

##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관리·운영 위·수탁 협약서(안)

대구광역시(이하 "시"라 한다)와 △△△ (이하 "△△" 이라 한다)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27조,「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관리 및 운영 조례」제18조,「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제21조,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(Daegu Textile Complex,이하 "DTC"라 한다) 관리·운영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계약은 "시"가 지역 섬유패션산업의 발전, 섬유박물관의 운영 및 DTC 시설의 종합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해 DTC에 관한 사무를 "△△"에게 위 탁함에 있어 "시"와 "△△"의 권리·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탁사무) ① "시"가 "△△"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지역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
- 2. DTC 시설의 종합적인 관리·운영
- 3. 섬유박물관 전시물 수집·보관·진열 및 기획·특별 전시회 운영
- 4. 기타 시장이 지역 섬유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
- ② "△△"가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(위탁시설, 장비 등)은 다음과 같다.

시 설 명	위 치	규 모	관 련 시 설
대구텍스타일 콤플렉스(DTC)	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27	부 지 : 13,732㎡ 연면적 : 49,667㎡ (지하2층, 지상9층)	건축 · 기계 · 전기 · 소방 · 조경 등 DTC 관련 제반 시설물

③ 제1항의 위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"시"와 "△△"이 협의하여 위탁사 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.

**제3조(위탁기간)** ① 이 계약에 의한 사업의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"시"와 "△△"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제4조(수탁재산의 관리) ① "△△"은 수탁재산(수탁기간 중 신·증축, 개·보수, 구입 등을 통하여 취득한 시설, 장비 등도 포함하며 이하 같다)을 관리·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,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- ② "△△"은 이 위탁계약 체결 후 수탁재산 신·증축, 개·보수, 주요 장비의 구입·폐기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"시"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"△△"은이에 관하여 "시"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"△△"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"△△"는 "시"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④ "△△"은 이 위탁계약 체결 후 "시"에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(신·증축, 개·보수 포함)하거나,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- ⑤ 이 위탁계약 체결 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"△△"이 설치하거나 구입(신·증축, 개·보수 포함)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지체 없이 "시"에게 기부하고, 수탁 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- ⑥ "△△"은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"시"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"시"는 "△△"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⑦ "△△"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(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)를 "시"에게 귀속시켜야 한다.
- ⑧ "△△"은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,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, 양도, 전매, 대여,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 할 수 없다.

#### \* 행정재산 일부 제3자 전대시(필요시 추가)

- ▶ 다만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27조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・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(轉貸)할 수 있다. 이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은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별표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세부 운영기준을 따른다.
- ⑨ "△△"은 수탁재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(안전점검 포함)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"시"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사업계획) ① "△△"은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(이하 '사업계획서'라 함) 전년도 ○월말까지 "시"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단, 당해연도(최초 연도) 사업계획서는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한다.

-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,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"△△"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·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, 기구·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·급여·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④ "시"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, "△△" 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·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⑤ "△△"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"시"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⑥ "△△"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연간 업무 달성 및 진척도,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OO일 이내에 "시"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.

제6조(사업의 수행) ① "△△"은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,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"△△"은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·처리기간·처리과정·처리기준·구비서류·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"시"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

- 여야 한다. "△△"은 사무편람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"시"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③ "△△"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 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"△△"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,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⑤ "△△"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, 소속 근로자,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7조(자부담 계획의 이행) ① "△△"은 수탁기관 선정시 제안한 연도별 자부담 계획(붙임2)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② "△△"은 자부담계획에 따른 연도별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○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"시"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8조(근로약정 이행 등) ① "△△"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,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·복리후생·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 이를 실행하기 위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 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시 "시"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업무공간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② "△△"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계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 비율이 80%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,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③ "△△"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, "시"는 위탁기간 만료시 "△△"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④ "△△"은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시, 계약해지시, 계약기간 만료시 현 근로 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"시"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.
- ⑤ "△△"은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수탁사무 관련 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을 25%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, 상시·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 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⑥ "△△"은 분기별로 임급 지급 및 집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지급명세서를 "시"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관계법령 등의 준수) ① "△△"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「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관리 및 운영 조례」,「대구광역시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,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및 관계 법령과 "시"의 조례,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"△△"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 법」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0조(사업비 지급 및 집행) ① "시"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(이하 "사업비"라한다)를 "△△"에게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하되, 그 금액은 "시"의 예산과 "△△"의 사업계획,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"시"가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.

- ② "△△"은 사업비를 "시"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, 지 방재정법 및 대구광역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·집행하여 야 한다.
- ③ "△△"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,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- ④ "△△"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"시"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월 전에 관련 사업계획,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"시"에게 청구한다.

제11조(수입금의 징수·처리) ① "△△"은 수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용료·수수료·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.

- ② "△△"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·수수료·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징수대상·징수방법·징수금액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사전에 "시"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"△△"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등의 수입금은 "시"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. 단, 이 계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

등으로 인하여 운영 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"시"와 "△△"의 협 의에 의하여 정산한다.

④ "△△"은 징수한 수입금에 대하여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여야 하며, 그 수입·집행계획 및 그 정산내역서를 제5조에 정한 사업계획서와 함께 "시"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(정산 및 반납) ① "△△"은 사업비 및 수입금에 대하여 매 분기별 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이자 및 부수수입을 포함한 정산서(주요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)를 작성한다. 분기별로 정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이내에(4분기는 종료 25일 전까지) 제출하고 회계연도 종료 20일 전까지 "시"에사업비와 수입금 잔액 및 기타 수익을 반납하여야 한다. 회계연도 종료 20일 전까지 "시"에자시합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 25일 전까지 제출하고, 회계연도 종료 20일 전까지 "시"에 사업비와 수입금 잔액 및 기타 수익을 반납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정산 및 반납시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거나, 사무의 특성상 회계연도 내에 정산 및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"시"와 협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
- ③ "△△"은 위·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생이자 등 부수수입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서(주요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)를 작성하여 "시"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비 잔액과 수입금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.
- ④ "△△"은 제2조에 따른 위탁사무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7조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 사무인 경우,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위탁사무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고 제출하여야한다.
- ⑤ "△△"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 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,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"시"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.
- ⑥ "시"는 "△△"이 제출한 사업비 정산서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·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, "△△"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3조(감사, 관리·감독) ① "시"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계약내용 이행여부, 예산 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, 근로환경 등 " $\triangle$   $\triangle$ "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, 관리·감독한다.

- ② "시"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감사, 관리·감독을 하며,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. 또한, "시"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관리·감독할 수 있다.
- ③ "시"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,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"△△"에게 요구하거나 "시"의 소속직원 또는 "시"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"△△"의 업무상황·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"△△"은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④ "시"는 "△△"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있고, 관계 임직원에 대하여 「대구광역시 행정감사 규칙」제27조에 따라 처분또는 처분지시・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"△△"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⑤ "시"는 "△△"과의 위탁기간 만료시 "△△"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감사, 관리·감독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
제14조(성과평가) ① "시"와 " $\triangle$   $\triangle$ "은 협의에 의해 위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, " $\triangle$   $\triangle$ "은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
② "시"는 제2조에 따른 위탁사무가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 성과평가 대상 사무인 경우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, "△△"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5조(계약이행의 보증) ① "△△"은 위탁기간 동안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매년마다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"시"가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,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"시"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"시"에 제출한다. 다만,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"시"에게 제출하도록 한다.

② "시"는 "△△"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계약 보증금을 "시"에 귀속시킨다. 제16조(보험가입) "△△"은 위탁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,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(배상책임보험)에 가입하고 "시"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7조(지위이전, 제3자 위탁 금지) ① " $\triangle$  $\triangle$ "은 이 계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수 없다.

- ② "△△"은 이 계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,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.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" $\triangle$  $\triangle$ "은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"시"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3자의 위탁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" $\triangle$  $\triangle$ "가 책임을 진다.

제18조(민·형사상 책임) ① " $\triangle$   $\triangle$ "은 이 계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·사고·손실에 대하여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 다만, " $\triangle$   $\triangle$ "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.

② "△△"의 귀책사유로 "시"가 제3자에게 이 계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"△△"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"시"의 손해(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)를 즉시 "시"에게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9조(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) ① "시" 또는 " $\triangle$   $\triangle$ "이 이 계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(이하 "해지 등"이라 한다)를 하고자 하는 경우 3월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- ② "시"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계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.
- 1. "△△"과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
- 2. "△△"이 이 계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 운 사정이 있는 경우
- 3. "△△"이 정당한 사유 없이 "시"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 성실하게 응하여 위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
- 4. "△△"이 "시"의 동의 없이 "시"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수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위·수탁계약이 존속되기 어려운 경우
- 5. "△△"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·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,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, 회계부정,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

- 6. "△△" 또는 그 임직원이 사업비를 횡령하거나, 수탁받은 사무 및 이 계약 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
- 7. "△△"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·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
- 8. "△△" 또는 그 임직원이 위탁 및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
- 9. "△△"의 부도, 회생절차 개시, 파산, 해산, 영업정지,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10. "△△"이 이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「최저임금법」 제6조 제1항, 제2항이 나 「근로기준법」제43조를 위반하여「최저임금법」제28조나「근로기준법」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(다만,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)
- 11.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
- 12. 천재지변, 전쟁 또는 사변,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
- ③ "시"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" $\triangle$  $\triangle$ "과의 이 계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 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" $\triangle$  $\triangle$ "에게 통보하고,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④ "△△"은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계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"시"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20조(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) ① "△△"은 위·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- 1. 수탁재산(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, 장비 등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점검의 무: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의 1개월(해지 등의 경우에는 O일)전에 "시" 또는 "시"가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수탁재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,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에 수탁재산을 "시"에게 인도하여야 한다.
- 2. 수탁재산 보수의무: 제1호에 의한 점검결과 수탁재산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"△△"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완료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한다. 단, 원상회복이불가능한 경우에는 "시"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"시"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인도한 본 수탁재산을 "대구시"가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, "△△"은 "시" 또는 "시"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·교육하고, "△△"이 이용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요령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필요한 협력을 하기로 한다.

③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" $\triangle$  $\triangle$ "은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" $\triangle$  $\triangle$ "가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,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"시"에 즉시 반환한다.

제21조(비밀유지의무) "△△"은 이 계약을 위한 준비절차, 계약의 체결, 이행을 비롯한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"시"의 비밀사항,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, 위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2조(계약의 해석)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「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관리 및 운영 조례」,「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,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, 기타 관계 법령 및 "시"의 조례, 규칙을 따른다.

-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"시"와 " $\triangle$   $\triangle$ "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"시"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

제23조(계약의 효력 등) ① 이 계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. 다만, 위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, 민·형사상의 사건·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·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때까지, "시"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, 관리·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관리·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제20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계약에서 정한 위·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.
- ③ "△△"은 이 계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"시"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, "시"와 "△△"이 서명 날인 각각 1부씩 보관하며, "시"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.

## 20○○년 ○월 ○일

"시" 대구광역시(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)

시 장 권 영 진

"△△" △△△△(대구광역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)

대표자 ○ ○ ○

### [관련 법령]

#### ■ 지방자치법

####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#### 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####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</u>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### 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#### 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

- ① 법 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<u>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재산을 관리하</u>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- ② <u>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</u>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#### 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~ 제15조

#### 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

-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  -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 -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 -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  - 4.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-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・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-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,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## 제12조(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 기준 등)

-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, 재정 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 보유의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(이하 "민간수탁기관"이라 한다)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-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<u>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.</u> 다만, 민간위탁의 목적·성질·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,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, 처리기준의 불공정,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한다

#### 제13조(계약의 체결 등)

-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② <u>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</u> 위탁의 목적,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, 위탁기간, 민간수탁기관의 의무,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#### 제14조(지휘·감독)

- ① <u>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</u>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-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.
-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#### 제15조(사무편람)

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, 처리기간, 처리절차, 처리기준, 구비서류,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

#### 두어야 한다.

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## ■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

#### 제22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-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및 제21 조에 따라 사용・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・납부방법 등을 위탁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.
- 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자(이하 "관리수탁자"라 한다)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·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
- ③ 관리수탁자가 사용·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, 제3자에게 전대(轉貸)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.
- 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<u>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</u>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#### ■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, 제13조~14조, 제18조

#### 제4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대구광역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-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-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-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-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#### 제13조(수탁기관의 선정방법)

- ①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(이하 "경쟁방법"이라 한다)을 원칙으로 하며,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기관을 경쟁방법 외의 방 법으로 선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경쟁방법으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, 신청자가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시의 민간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에 제27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및 제28조에 따른 감사결과, 제29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### 제14조(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설치)

-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이의신청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대구광역시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- 1.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·서류 등의 제출요구
- 2. 관계 공무원,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
- 3.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

#### 제18조(위탁계약 체결)

- ① 시장은 사무의 위탁을 위해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사항을 공증하여야 한다.
  - 1. 수탁기관의 명칭(성명) 및 주소
- 2. 위탁계약 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
- 3.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
- 4. 수탁기관의 의무
- 5. 관리·감독 및 회계감사 결과가 포함된 연간 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
- 6.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사항
- 7. 위탁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
- 8.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경우 그 사무의 범위
- 9. 그 밖에 시설의 안전관리 등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-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.
- ④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.